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796
----------	-----

2012년 6월 22일
교 육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2년 6월 8일, 서울특별시교육감
- 나. 회부일자 : 2012년 6월 1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
(2012년 6월 22일 상정, 원안 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평생진로교육국 김양옥)

가. 제안이유

-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 및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학생인권옹호관은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하도록 함(안 제2조).
-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신속하게 그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).
-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센터 직원 채용 및 직무 평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성용)

- 「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」 제41조제2항이 “학생인권옹호관의 복무, 처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.”로 규정하고 있는 바, 동 조례안은 이에 따라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 타당한 입법이라 하겠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.
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.

8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」 제41조제2항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임용등)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되,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.

②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이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신속하게 그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.

제3조(직무 수행 등)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조례 제39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되 학생인권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.

②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교육센터 직원 채용 및 직무 평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